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6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정기세무조사 선정 시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의 정기세무조사 제외(운영석의원안)	3

I. 개요

1.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28.
-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의 부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1조의6제5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기세무조사 선정 시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의 정기세무조사 제외(윤영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제81조의6제5항) ○ 세무공무원은 다음 요건을 <u>모두 충족하는 자</u>에 대해서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에서 제외(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세무조사 실시) -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u><신 설></u>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세무공무원은 다음 요건을 <u>충족하는 자</u>에 대해서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에서 제외(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세무조사 실시) - <u>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로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u>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u>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u>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u>중소기업</u> · <u>신고기한 2개월 전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자</u> · <u>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u> · <u>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닌 사업자</u>

* 윤영석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4)

□ 개정안은 사업자 중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적정한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1조의6¹⁾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항²⁾에서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소득세법」 제70조의2³⁾에서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⁴⁾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인세법」 제70조⁵⁾에서도 소규모 내국법인⁶⁾이 성실한 납

3)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①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종사자의 경우 15억원 이상,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종사자는 7억 5천만원 이상, ③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우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5)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소규모 법인 역시 성실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에 처음 시행되었음.

아울러,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과세함으로써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고 과세 형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에 도입되었음.

- 개정안은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공적인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①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함.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요건(개정안)]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② 신고기한 2개월 전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자
- ③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 ④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닌 사업자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세무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일정 부분 담보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이미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납세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성실성 담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국세청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⁷⁾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도 수준인 약 14,000건 이하로 운영하며,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둘째,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경제주

7) 국세청 보도자료,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2.8.

체로서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재정 여건과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시 각종 증빙자료의 준비, 회계자료 정리, 세무대리 비용 부담 등이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활용한 세무조사 완화 방안은 그 정책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한 기업이 오히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매출액 기준 15억원 이상인 기업은 개정안에 따른 성실신고확인⁸⁾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⁹⁾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법 제81조의6제5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② 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3의 요건은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으로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2.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3.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4의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4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5.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6.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초에 성실신고확인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을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된 현행 체계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현행 정기 세무조사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비교]

수입금액	정기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
① 3억원 이하	제외	제외
② ①과 ③ 사이	대상	제외
③ 5억원~15억원 이상	대상	대상

주1 세무조사 면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3항 및 제208조제5항

주2 성실신고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둘째, 세무조사는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것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성실신고확인을 통한 검증과 세무조사는 별개의 절차로 볼 수도 있음.

따라서, 단순히 세무검증을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제도를 세무조사의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성실신고확인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탈루가 적발되어 불성실 확인에 따른 세무사 징계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성실신고확인이 전반적인 신고 적법성을 검토하는 세무조사를 대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7